

군포시의회 공고 제 2018 - 2 호

군포시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성북임 의원이 대표발의 한 「군포시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 월 9 일

군 포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군포시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현실에 맞지 않은 현행 포상 조례를 정비하고, 제도 운영의 적절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의회 포상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개정내용)

- 가. 목적 및 포상대상 (안 제1조 ~ 제2조)
- 나. 포상의 종류 (안 제4조)
- 다. 포상의 요건 (안 제5조)
- 라. 포상방법 및 절차 (안 제6조 ~ 제7조)
- 마. 포상대상 제외 (안 제8조)
- 바. 공적심사 (안 제9조)
- 사.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안 제10조)

4. 의견 제출

가. 제출기한 : 2018년 2월 14일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자우편, FAX

다. 제출내용

1) 조례안에 대한 의견 (붙임 서식 참조)

2)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군포시의회 (참조 : 의회사무과)

1) 주 소 : 군포시 청백리길 6 군포시의회

2) 전화번호 : 031-390-8715, FAX 031-392-4004

3) 전자우편 : zeeves@korea.kr

붙임 1. 의견서 서식 1부.

2. 군포시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군포시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군포시 조례 제 호

군포시의회 포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의정활동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시민(외국인 포함), 공무원, 유관기관 임직원, 학생 및 단체에 수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타 지역 거주자나 기관·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패), 상장, 감사장(패)으로 구분한다.

제5조(포상의 요건) 포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여한다.

1. 표창장(패)

- 가. 의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경우
- 나. 공무원 및 유관기관·단체 임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 성적이 우수한 경우
- 다.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졸업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경우
- 라. 그 밖에 봉사 등 선행 및 효행 실천으로 주위의 모범이 되는 경우
- 마. 그 밖에 현저한 공적이 있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상 장

- 가. 각종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서 입선한 경우
 - 나. 학술·예술·체육, 그 밖의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 다. 각종 교육 성적이 우수한 경우
3. 감사장(패)은 의정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의회를 발전시켰거나, 의회의 명예를 높인 시민이나 기관·단체에 수여한다.

제6조(포상방법)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수여한다.

- ② 제1항의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7조(포상절차) 의회 의원, 각급 기관 및 단체장, 의회사무과장 등이 포상 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포상 예정일 10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장 및 상장의 경우에는 추천이 없더라도 포상할 수 있다.

제8조(포상제외) 제7조 본문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공기간 6개월 미만인 자
2. 기간이 동일한 같은 공적으로 군포시의회로부터 포상을 받은 자
3. 기간이 동일한 같은 공적으로 1년 이내에 상급기관의 표창을 받은 자
4. 소속 단체의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공사생활이 문란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는 자

제9조(공적심사) 포상은 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감사장(패) 및 상장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공적심사위원회) ①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회 부의장으로 하고, 위원은 의원 2명, 의회사무과장 등 총 4인으로 구성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부위원장이 되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는 의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

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공적심사가 시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1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제12조(포상수여대장 등제) 포상 수상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포상수여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3조(포상사실확인) 포상을 받은 자가 표창장·상장·감사장의 분실 또는 파손 등의 사유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포상수여 사실 확인서를 교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표 창 장(상 장)

주소 또는 소속
직 성명

표 창 문(상 문)

년 월 일

군 포 시 의 회 의 장 ○ ○ ○ (인)

(별지 제2호서식)

공 적 조 서

(1)성 명											(한 자)	
(2)생년월일								-	(3)군번 (군인의 경우)			
									(4)국적 (외국인의 경우)			
(5)주 소												
(6)직 업											(7)소 속	
(8)직 급					(9)직 위					(10)대외직명*		
(11)근무기간											(12)공적분야	
(13)공적요지(50자 내외)												
조 사 자												
(14)소 속											(15)직 위	〇 〇 〇 장
(16)직 급											(17)성 명	(인)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〇〇〇 장 성명 〇〇〇 (직인 또는 인)												

주요 학 력 및 경 력			
(18) 년 월 일	(19) 이 력	(20) 년 월 일	(21) 이 력
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2) 년 월 일	(23) 내 용	(24) 년 월 일	(25) 내 용
(26) 공 적 사 항			

(별지 제3호서식)

공 적 심 사 의 결 서

공적심사 요 구 자 인적사항	소 속	직위	성명	생년월일	포상경력	비고
의결주문						
이 유						
년 월 일						
공 적 심 사 위 원 회 의 결						
직 위	성 명	서 명	심사결과		비 고 (사유 등 기재)	
			가	부		
위 원 장						
위 원						
위 원						
위 원						
최 종 의 결 결 과						

(별지 제4호서식)

포 상 수 여 대 장

포상 종별	발급 번호	포상 일자	기관	수 상 자						공적개요
				소속	직	성명	생년 월일	성별	주 소	

- 1. 포상대장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으로 구분 등재할 수 있다.
- 2. 상급기관 또는 타기관이 표창을 전달하는 경우에도 발급번호가 발부되는 경우 등재한다.

(별지 제5호서식)

포상수여 사실 확인서

포상 번호	포 상 연월일	포상 종류	포상 기관	소속 또는 주소	직위 또는 직급	성 명	생년월일 (성별)
포상하게 된 공적개요							

상기와 같이 포상하였음을 증명 함

년 월 일

군포시의회의장 인